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6-212호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'구직자취업촉진법')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11. 2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

1. 건　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　거: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9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 (생년월일)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 불능 사유
			처분 사유	처분의 내용	
노O홍 (07.11.13.)	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(이하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상담일('26.6.29./7.10.)에 방문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여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	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② 해당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	폐문 부재

4. 공고기간: 2026. 11. 2. ~ 2026. 11. 16.(15일간)
5. 의견제출방법: 공고기간 내 직접 방문(부산고용센터 2층 국민취업지원과) 또는 팩스(051-719-4513)
6.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민취업지원과 이강미(Tel. 051-860-2001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